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2. 9. 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1) 제안이유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음.

2)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위치 : 마포구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874.3m²
 - 용도 : 공동주택(189세대, 민간임대 48세대 포함), 오피스텔(7호), 근린생활시설

- 시행자 : 신촌이칠개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추진경위
 - 2013. 9. 26.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2014. 8. 28. : 신촌지역(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서울시고시 제2014-304호)
 - 2021. 8. 26.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제안 신청
 - 2021. 9. 13. ~ 10. 4.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 11. 25. : 시 · 구합동보고회
 - 2022. 1. 06. ~ 2. 7. : 주민공람
 - 2022. 4. 8. : 주민설명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나. 주민공람 : 2022. 1. 6. ~ 2022. 2. 7. (30일)

다. 공청회 : 2022. 4. 8.

3. 검토의견(신준호 전문위원)

가. 입안 배경

- 신촌지역(마포) 2-7지구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신촌역 부근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심기능저하, 도시 환경저해, 화재 및 재해발생 등 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공급 확대,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주요 변경 사항

- 2025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건축물 주용도를 기정 업무에서 주거 주용도로 도입하고 정비 시행면적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기정 정비기반시설(도로, 문화시설)은 폐지하고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어린이집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도입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상 획지면적(증317.5m²)이 증가함.
- 지구경계 조정으로 기존 문화시설을 폐지하고 2-9 존치지구의 2개 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지구경계를 변경하였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참고.

다. 종합의견

- 금번 계획 변경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공급확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43호)에 따라 신촌역 부근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도심의 기능 저하와 도시 환경을 저해하여 화재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공공성 확보 및 주거공급 확대 등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되었음.
- 기정 건축물의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함에 따라 심의에 의한 완화 적용사항으로 상한용적률과 높이 완화와 건축물 기부채납분 지상 1층 어린이집, 2~3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아울러 쌈지공원이 계획되어 공공시설 제공의 순부담률 14.69% 확보하였음. 이는 상위계획 및 관련기준과

의 정합성을 확보하였기에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건축물 기부채납분에 용도와 관련 지역 필요시설의 주민요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임대주택 계획에 있어 다양한 수요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계획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한 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 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주민의견의 수렴과 유관기관의 협의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별첨】 유관부서(서울시 등)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서울시

연번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1	서울시 도시 활성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전환 (민간임대→공공임대) 가능 여부 및 임대주택 전용면적의 확대 가능 여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공급확대) (2019.10.17.)에 따라 임대주택 계획안 마련하였음 (3-2. 공공주택 확보기준) - 상업지역 :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가능 [사업대상지 임대주택 확보(안)] - 상업지역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계획 	부분 반영 (첨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생활SOC(일자리카페)조성 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대상지 특성(대학가 인접지역 등) 등을 고려하여 생활SOC시설로서 '일자리카페(일자리 창출공간)' 도입예정 	반영 (첨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 공급계획(기반시설의 종류 및 부담률)의 적정성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마포구공고 제2020-1541호, 2020.12.24.) 내용 준용하여 계획안 마련 - 기반시설(문화시설) 폐지 재정비 진행내용 반영 	반영 (첨부3)
2	서울시 도시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신청된 정비기반시설 부담률(8.8%)이 기결정 수준(15%)에 미치지 못하므로 개발여건과 정비기반시설 용량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 공공기여 방식 등 적정성 재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마포구공고 제2020-1541호, 2020.12.24.) 내용 준용하여 계획안 마련 - 기반시설(문화시설) 폐지 재정비 진행내용 반영 - 마포구내 부서 수요조사 및 생활권계획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청년창업지원센터 계획 반영 (부담률 8.8% → 14.69%로 상향 조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진행 중인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용역」과 정합성을 유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변경) 용역과 정합성 유지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도서 작성할 것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주거정비과-19788호, 2019.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계획 도서 작성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겠음 	반영

연번	부서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3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정 문화시설1(247.9㎡)’은 금회 협의(안)상 일반획지로 변경 계획하였으나, 「2030 서울생활권계획」 상 지역필요시설등 타 공공시설로의 전환 필요성 우선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마포구공고 제2020 -1541호, 2020.12.24.)내용 준용하여 계획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문화시설) 폐지 재정비 진행내용 반영 지역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상지 특성(대학가 인접지역 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청년창업지원센터 계획 반영 생활SOC시설로서 ‘일자리카페(일자리창출공간)’ 도입예정 	부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인센티브(200%)중 ‘생활SOC(일자리 카페, 20%)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생활SOC 세부항목(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외의 용도로 계획하였고 세부 운영계획을 미제시한 바, 구체적인 운영 및 담보방안 검토 및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상지 특성(대학가 인접지역 등) 등을 고려하여 생활SOC시설로서 ‘일자리카페(일자리창출공간)’ 도입예정 세부 운영계획안 제시하였으며, 생활SOC 시설 유지 및 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첨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계획(34㎡ 43세대, 39㎡ 10세대)’은 ‘21.4월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54조 상 국민 임대주택 규모 이하에서 계획 가능하도록 변경된 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 측면에서 평형 다양화 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전용면적 확대방안 검토하였음 (임대주택 전용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안) 34type(43세대), 39type(10세대) - 조치안) 39type(27세대), 49type(21세대) 	반영 (첨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식 주차장’은 임대주택(34㎡ 43세대)과 연접하여 배치한 바, 소음 등 주거환경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방안 적극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가 부정형하여 지하주차장 추가확보 어려움 지하층은 자주식 + 기계식 주차장 계획 부족한 주차공간은 타워형 기계식주차장을 도입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팔레트 주차방식 도입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저해요소 해소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진동, 저소음 기계식주차설비 도입 - 흡음재 및 방진패드 도입으로 소음진동 최소화 	부분 반영 (첨부4)
4	서울시 시설 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확보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입면도, 단면도 등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확보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입면도, 단면도 등을 추가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연번	부서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5	서울시 공공 주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시는 도심 및 생활권 중심지에서 직주근접의 주택을 확대하고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추진시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 및 주거주용도 변경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공급확대) (2019.10.17.)고시 내용을 적용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 및 주거주용도 변경 제안한 사항임 - 2-7지구 주용도 변경 : 업무 → 주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정비계획(안)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이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공급 확대) (2019.10.17.)에 따라 임대주택 계획 안 마련하였음 (3-2. 공공주택 확보기준) - 상업지역 :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가능 (사업대상지 임대주택 확보(안)) - 상업지역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계획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동일(유사)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계획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우리시와 사전협의 후 토지등소유자 동·호수 추첨시 함께 추첨)이 집중되지 않고,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한 생활환경(채광, 조망 등), 외관, 마감 계획 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내 공공임대주택 도입계획 없음 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동일한 생활환경(채광, 조망 등), 외관, 마감계획 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6	서울시 도시빛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 조명기구 설치시 「조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 대상 : 동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개량·증설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동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벌표(불임 참조) 시기 : 공동주택 옥외 경관조명, 기부채납 도로조명 계획 실시설계 완료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관련법규 기준에 적합하게 절차를 이행 하겠음 	추후 반영
7	서울시 물순환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시행 시 저영향개발(LID), 물재이용, 수질, 수질오염총량관리, 유출지하수, 토양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협의 및 승인·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전협의 및 승인·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8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사업도서를 검토한 바, 동 사업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 102m(해발지 반고+건물높이+옥탑, 피로침 등 높이)” 이하인 지역으로 현 계획단계에서는 우리 부서 별도 의견 없으며, 향후 사업시행 인가 등 관련 인·허가 신청 시에는 민방위담당관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 시 민방위담당관으로 협의절차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 마포구

연번	부서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1	마포구 공원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쌈지형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확보 미대상이므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상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이면도로 전면 공지변에 쌈지형 공지를 배치하였으나, 편의시설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휴게공간(쉼터) 제공 토록 계획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쌈지형공지 내 휴게공간(쉼터) 계획하였음 	반영 (첨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안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형의 부지형태 및 건축물의 높이(지상29층) 상 건축물의 후면, 측면, 조경공간은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일조량 부족 등으로 수목생육여건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 조경배치를 조정하거나 녹지 폭을 확대하고, 수목을 최대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계획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목 생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음지에 생존이 강한 식종 조성을 검토하겠으며, 수목을 최대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는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상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준수하고 방수·방근, 배수판, 경량토양 등 일체화된 녹화시스템 적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녹화는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상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준수하고 일체화된 녹화시스템 적용하겠음 	반영
2	마포구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장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임 - 미술장식품 설치방법은 공모대행제, 건축주 자체 공모, 건축주 임의 선정, 기금출연 방법이 있음 도시디자인 심의 -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변경됨 (건축과-4607(2021.02.16.))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조례」 범표1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관련법규 기준에 적합하게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추후 반영
3	마포구 건설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점용 및 공유지 관련 등 소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제안지가 이면도로로 되어있어 현재 현황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 해당은 없으나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신규로 보도를 신설하는 경우 보도횡단 차량진출입 시설은 건설관리과로 방문하여 착공 전 공사용 도로점용 허가, 사용승인 신청 전 부설주차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보도횡단 차량진출입 시설은 해당 건물이 공동주택이 아닐 경우 차량진출입로의 공시지가 및 면적에 따라 매년 점용료가 발생하므로 보도 신설 시 해당 건물에 대한 사전 공지 필요 - 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도로점용 및 공유지 관련 등 소관사항을 준수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p>로에 차량 출입시설을 설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설치 시 허가처리 지침을 참고 하여 시공해야함. - 공사용 일시점용(1년 이하) 및 1년 이상 점용의 경우에도 도로점용 신청해야 함 - 정비구역 필지 내 건물 일부가 공공용지인 노고산동 57-51 도로(시유지) 일부 점유한 내역 있음 		
4	마포구 문화 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폐지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견 없음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 별 보존조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조사19, 시굴조사 1, 발견시 신고 2 • 부서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이 해당 재개발 사업 부지에 다양한 보존조치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상기 필지 별 보존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가능 - 별도 보존방안을 수립하여 보존조치를 이행할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적합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견시 신고 등 다양한 보존조치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바, 관련 법규 기준에 적합하게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5	마포구 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시 일반적인 하수분야, CCTV 촬영범위, 수리계산서 분야, 저영향 개발, 하수원인자 부담금, 지하수 분야 등에 대하여 협의 및 신고 절차 기준 제시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사업시행 시 관련법규 기준에 적합하게 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6	마포구 여성 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부지활용계획 수요조사 시 의견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사업(지하주차장)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마포어린이집 대체신축 이전 필요 •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을 활용하고 충분한 보육실을 확보하여 365일 열린어린이집 설치 <서울시에 단 5개소(마포, 양천, 관악, 노원, 중랑) 운영 중> • 필요성: 철거가 예정된 마포어린이집(양화로18 안길 21) 인근에 위치(차량 5분, 도보 15분 거리)하여 대체신축부지로써 최적의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 결과 반영하여 어린이집 조성계획 포함 하였음 	반영

□ 외부기관

연번	부서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1	서울 지방 항공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건축물은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지표로부터 높이가 150m미만(101.5m)이므로 공항시설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 포함)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설치되는 크레인은 지표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 포함) 설치 대상에 해당되므로 우리청과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 포함) 설치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사업시행시 크레인 설치에 대해 사전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2	수도 방위 사령부	<p>[의견(군보 심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건물 위치는 P73 B공역이고, 신축건물은 행정 기관 위탁고도를 +19.2m 초과함. 신축건물 건축통제거리 내 0개 진지가 신축건물보다 고도가 높고 탐지와 식별, 타격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B공역 동의 기준에도 부합함. 따라서 건물 신축으로 인한 작전에 제한사항이 없고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동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를 준수하여 100m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작전에 제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3	서울 교통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 요청하신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에서의 건축 행위는 『철도안전법』제45조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협의 대상이 아님(도시철도 구조물로부터 30m를 초과)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공사 시행 시 도시철도 시설물에 위험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공사 시 도시철도 시설물에 위험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반영
4	마포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공사시행 3일 전까지, 우리서에 도로공사 신고서를 필히 제출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관련법규 기준에 적합하게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도로공사시행 3일 전까지 도로공사신고서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조성에 따른 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량속도저감 효과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지 주차장 진출입로 앞 횡단보도와 신촌로 18길9 앞 보도와 보도를 이어주는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속도저감 효과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음 	반영
5	서울시 서부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서부14취학권역, 서울창서 초등학교, 서부4·5학교군)을 검토한 결과 본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의 경우 증가예상 학생 수를 포함하여도 유,초,중학교 모두 학생배치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나, - 향후 계획 변경 시 우리교육지원청과 학생배치여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교실증축 및 개보수,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에 대한 명시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계획 변경 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진행하겠음 	추후 반영
6	마포 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3 관련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며, 소방기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12 관련 소방자동차전용구역 설치 대상임 아울러 추후 실시설계 시 소방활동 여건이 반영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의토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실시설계 시 소방활동 여건이 반영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의 진행하겠음 	추후 반영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7. 기타 : 없 음